

-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의 상생발전을 위한-

# 우호교류협약서

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(이하 “양기관”)은 양 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고 양성평등한 조직문화조성과 지역사회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교육·문화 사업에 관한 교류 및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분야)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협력한다.

- 가.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내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 및 컨설팅 지원
- 나. 자치경찰 임무의 인권침해(성희롱·성폭력 사안) 예방 및 성인지 교육 등 양성평등 관련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상호 협력
- 다. 도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, 홍보사업 등 공동 사업 추진에 대한 상호협력
- 라. 기타 양 기관이 상호 필요하다고 합의된 사항

제3조(비밀유지) 양 기관은 본 협약에 의해 제공되거나 취득하게 되는 자료 및 정보의 비밀유지와 유출방지를 위하여 상호 동의 없이 본 협약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4조(협의조정) 양 기관은 신의성실과 상호존중의 원칙에 따라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,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협약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5조(효력 및 협약기간)

- 가. 본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- 나.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.
- 다.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상호 서명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,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본다.

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,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1년 7월 21일

제주여성가족연구원

원장 민무숙

민무숙

제주특별자치도  
자치경찰단

단장 고창경

고창경